

■ 휴가 제도

휴가명	내용
연차저축 및 장기 휴가 허용	권장 휴가일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3년 누적 사용, 장기 휴가 허용(20일 이상)
배우자 출산	10일(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가능 및 1회 분할사용가능)
입양휴가	20일 사용 가능
보호휴가	출산전후 90일(산후 최소 45일 확보) ※다태아의 경우 120일(산후 최소 60일 확보) 여성 직원의 경우 임신한 경우의 검진 월 1일(유급), 생리휴가 월 1일(무급)
유사산 휴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최저 5일~최고 90일까지(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배우자 유사산휴가	5일(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증빙 필요)
난임치료휴가	연 3일(의료기관 진단서, 시술 증빙 필요)
자녀돌봄휴가	연 5일(증빙 필요) 1. 자녀의 입원/병원진료 필요시 2. 재해/전염병 등의 긴급상황으로 보육기관 휴업, 배우자의 입원 등으로 자녀돌봄 필요시 3. 학교 공식행사 참여 시(단, 학교개교기념일, 재량휴무일, 방학, 수능일 등은 사용 불가)
가족돌봄휴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신청(년/10일,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됨)

■ 휴직

○ 휴직 사유 및 기간

구분	휴직사유	기 간
육아휴직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신청	3년 이내, 2회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자동육아휴직	출산휴가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 가능	1년
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0일, 분할 사용 시 1회 기간은 30일 이상

■ 근로 제도

구분	내 용	비 고
유연근무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1주 평균 40시간근무, 월단위 정산, 시무와 종무시간을 근로자가 선택 - 제도 취지 : 장시간 노동문화 근절 및 일.생활 균형 실현이 목적임	Core time 운영 월~목 : 10시~15시 금 : 10시~12시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임금 삭감 없음) 근로시간단축기간 : 1년 급여 : 근로시간에 비례 산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직원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 사고 등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단축기간 1년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구 분	설치 및 비품비치 현황
대전 본원	 
JGRC 분원 모성보호실	